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1
----------	-----

2025. 1. 24.(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월 21일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2025년부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 정책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후,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저출산에 따른 연구구조 변화’,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와 같은 시대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요구에 근거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한 주요 교육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¹¹⁾

○ 교육부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 후 일반고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과 같은 해 8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표 1〉 교육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2020년~)		⇒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2022년~)		⇒	일반계고 단계적 적용 (2022~2024년)		⇒	전체 고교 전면 적용 (2025년~)	
	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1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특성화고: 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204단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비중*	55.9%	84%	95%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과목 9등급 병기)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과목 9등급 병기)		

※ 자료출처: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2021. 8.)

1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38쪽 (2022. 7.)

○ 충청북도교육청도 2018년 연구학교 2교를 시작으로 2019년 12교, 2020년 21교, 2021년 65교, 2022년 80교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반고와 직업계고 전체 83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진로 지도 등 효율적인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음

〈표 2〉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연도	내용	비고
2018 ~	충북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2020~2023	충북 고교학점제 선도(도약)지구 지원 업 운영	마이티고 학점제 도입 (2020)
2021~2022	충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2022)
2023~2024	충북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사업 추진	일반고 학점 도입
2025	모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표 3〉 고교학점제 연구·준비(선도)학교 현황

1. 일반고



2018	연구 2교
2019	연구 5교, 선도 2교
2020	연구 5교, 선도 8교
2021	연구 7교, 선도 32교
2022	연구 14교, 선도 40교
2023	연구 10교, 준비 47교 모든 일반고 100% 운영 ※ 선도→준비학교로 전환
2024	연구 11교, 준비 46교

2. 직업계고 선도(연구)학교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비 고
2019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2차) 5개교 선정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4교)	연구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청주하이텍고, 충주공고
2020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3차) 3개교 추가 선정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7교)	추가선정: 청주공고, 충북공고, 청주농고
2021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18개교 추가 선정	연구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제외한 25교
2022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 연구학교→선도학교 전환	모든 직업계고(26교) 선도학교 운영
2023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2024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 고교학점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책으로 각 시도교육청 별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강원, 경기, 경남, 인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6곳 임

〈표 4〉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2025. 1. 기준)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개정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	2023. 8. 4.	일부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2020. 7. 15.	타법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1. 5. 6.	제정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3. 4. 11.	제정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3. 12. 29.	일부개정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5. 22.	일부개정

- 이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통하여 확인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으로 담아 제도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 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근거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함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호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조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4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본 조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 정책과 세부 추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제2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2024년 3월 20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와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요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제6조는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부합하는 학과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이 요구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따른 고교학점제 교과별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교원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7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왔지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및 교과 개설, 수업량 등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문제 상황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2022 교육과정과 함께 학교 교육현장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유형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적 실효성을 담보할 내실있는 운영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업 및 진로 교육 중심의 고교교육 재구조화가 2022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의 학사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기성 측면에서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고교학점제의 학교 교육현장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총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칙 조문에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교육감의 책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들은 앞서 조문별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인 조문 체계도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과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수강, 학교 교육활동과 진로의 연계성 강화, 지역 내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개발
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운영 자료 분석 및 제공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연수 자료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 제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
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고등학교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발생 및 단위학교 운영 지원비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1항, 제5조, 제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하며,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운영지원비 포함)를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2025년 고교학점제운영 예산 소요 예정액은 9,487,595천원이며 매년 이에 준하는 예산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추계함
다만, 학점제 공간조성 사업은 교육부 사업 여부와 운영 시 도내 학교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고교학점제 운영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고교학점제 운영	47,437,975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다. 추계비용의 상세내역

- (학교)고교학점제 운영비 지원: 2,146,000천원
- 충북온라인학교 운영비 지원: 355,963천원
- 고등학교 교육과정 역량강화: 19,750천원
- 교육과정 특화학교 운영: 1,670,670천원
 - － 학교 지원비: 1,666,500천원
 - － 역량 강화 지원: 4,170천원
- 고등학교공동교육과정 운영: 677,720천원
 - － 지도수당 등 운영비: 672,000천원
 - －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개발: 5,720천원
-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208,554천원
- 고교학점제 연수: 6,520천원
- 고교학점제네트워크: 14,760천원
- 직업계고학점제 운영: 165,158천원
 - － 설명회, 자료개발, 지원단 운영 등
- 학점제학교공간조성 사업: 4,222,500천원
 - － 공간조성 사업은 교육부 사업 신청·선정을 통해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매년 교육부 사업 운영 여부와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47,437,975
고교학점제운영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47,437,975
재원 조달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9,487,595	47,437,975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6,724,463	6,724,463	6,724,463	6,724,463	6,724,463	6,724,463
	특별교부금	79,068	79,068	79,068	79,068	79,068	79,068
	자체예산	2,684,064	2,684,064	2,684,064	2,684,064	2,684,064	2,684,064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재원세부내역)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추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